

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: 2008. 2. 22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21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)

가. 제안이유

-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전 시민·유관기관단체·출향인사들이 동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1)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관한 재단법인으로 설립(안 제3조)
- 2) 재산의 조성은
 - 가) 사천시의 출연금
 - 나)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 - 다)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·물품 및 기타 재산
 - 라) 기타 수익금으로 함(안 제5조)
- 3)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(안 제7조)
- 4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,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할 수 있음(안 제16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, 제40조(사단법인의 정관), 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임원 등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(과건근무)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임
- 주요내용과 검토 의견으로
 -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
 - 시 출연금과 시민·유관기관 단체·출향인사들이 출연하는 금품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
 - 시 관내 대학생과 초·중·고등학생 해외 연수지원사업, 장학금지원, 우수 교사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 내용	답변자	답 변 요 지
탁석주 위 원	○ 제5조 재산의 구성에 있어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에 대한 설명 바람 ○ 제7조제2항 임원 구성에 있어 시공무원은 ? ○ 타시군 경우도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?	총무과장 엄 정 기	○ 현재로는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이사회등이 구성되면 설립목적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임 ○ 시장,총무국장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며 장학재단 설립계획과 정관 등이 확정되면 확정 될 것임 ○ 도내에서 인근 하동군을 포함해서 6개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음
이정희 위 원	○ 제4조 사업에 있어 3호 우수교사 지원사업은 맞지 않다고 봄 ○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공무원 파견, 겸임등의 규정이 있는데 타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봄 ○ 제17조 “지도감독 부분에 있어 확인, 검사, 지도, 감독하게 할 수 있다” 는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	“	○ 매년 사업비를 8억정도 투입함으로 지도, 감독은 철저히 이행할 것임

5. 토론요지 :

토론자 (발언자)	토론요지(발언요지)	비 고
이삼수 위 원	○ 현재 조성된 금액이 40억 정도이며 앞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17조 지도, 감독 부분에 있어 “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시장과 시의회 (또는 의장)에서 지정하는 자로” 수정 하였으면 함 ※재석위원 의견 -시장이 재단을 운영하는 경우 제3자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시의회가 지정하는 자를 추가 삽입하자는 의견임	
전문위원 최 진 기	○ 제17조 지도, 감독란에 시의회(의장)가 지정하는 자를 삽입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	

6. 심사결과 : 보류

7. 소수의견 : 생략